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22

제안연월일: 2024. 9. .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1044	정부	'24.6.27.	상정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828.)
	2201550	김영배의원 등 10인	'24.7.10.	상정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4.82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5.)는 위 2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폐업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종전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안 제36조)
- 나.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를 "체육시설업자" 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도지사, 시장·국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회원

- 2.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않은 일반이용자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자 휴업·폐업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	① 체육시설업자
<u>설업자</u> 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	
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사실을 <u>특별자치시</u>	<u>시 · 도</u> 지사,
<u>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u>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u>수 또는 구청장</u> 에게 통보하여	,
야 한다.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u>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
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u>는 구청장</u>
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	
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	
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
	<u>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u>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

<신 설>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u>보고</u>)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u>보</u>고하여야</u>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

1. 회원

- 2.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 습 약정이 종료되지 않은 일 반이용자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u>통</u> 보	_)		
			<u>통</u>
보하여야-			
제40조(과태	료) ①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5</u>. · <u>6</u>.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
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u>7</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